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2나52388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2나5238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3 선고 2022가단508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피고, 피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허브

담당변호사 박주현

변론 종결2023. 5. 26.

판결 선고2023. 7. 21.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3. 선고 2022가단5084 판결

주문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415,13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16.부터 2023. 7.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830,26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8째 줄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부분을 '원고는 2022. 2. 15.까지 이 사건 사고로'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구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가.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피고는 위 공사에 관하여 지시표시등 2매, 공사안내 4개, 교통 안내판 10개, 안전펜스 및 라바콘 100개, 야간 시 발광사인보드 20개, 드럼 20개, 야간 시 경광등 10개, 신호수 4명을 배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로공사 신고확인서를 안성경찰서장에게 제출하면서 교통관리계획 및 안전시설 설치지침을 준수하기로 하였다(갑2-3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작성된 교통안전처리 시설도에도 공사 현장이 시작되기 전의 위치에 라바콘을 사선 방향으로 설치하도록 표시하고 있고(갑2-31), 피고도 이러한 의무를

인정하면서 위 사고 발생 당일 아래 그림과 같이 수십 개의 라바콘을 설치하여 도로를 차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2023. 5. 24.자 준비서면 제3, 4면 참조).

DIAGRAM: 교통안전처리 시설도(이미지 생략)

위 지침 및 피고의 주장대로 라바콘이 피고 차량(위 그림에 '1t 사인카'로 표시되어 있다) 전방에 설치되어 2차로를 차단하고 있었다면, 위 그림의 우측 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에 도달하기 전에 라바콘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또한 사고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 여럿 존재한다면 그 곳에 흩어져 있는 라바콘이 확인되어야 함이 상식적이다.

그러나 원고 차량 운전자 D은 피고 차량을 충격할 때까지 라바콘에 부딪히거나 라바콘을 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갑2-26). 위 사고 당시 현장을 촬영한 갑2-9~12, 23, 24, 25의 각 영상(형사사건 기록의 일부이다) 어디에도 라바콘이 도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달리 현장에 라바콘이 설치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을5, 6은 사고 당시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아니다). 교통사고보고서의 일부인 실황조사서(갑2-14)의 사고 현장 약도에도 라바콘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 위 공사 현장에서 사용된 차선도색 작업도(갑2-30)에도 라바콘을 공사 현장의 전방이 아닌 좌우에만 설치하도록 표시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가 위 공사 현장 및 피고 차량 전방에 라바콘을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69조 제3, 4항에 규정된 안전시설 설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상금 지급의무의 성립

그렇다면 위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으로 원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원고가 피해자의 손해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가 면책되었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구상금 지급의무의 범위

가. 부담비율의 결정

이 사건 사고가 도로 도색 공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졸음 운전을

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음은 분명하다.

다만 피고가 규정을 준수하여 라바콘을 설치하였다면 원고 차량 운전자가 피고 차량을 충격하기 이전에 라바콘에 충돌하면서 줄음에서 깨어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가 망인의 적재함 탑승 행위를 제대로 제지하였다면 앞서 본 손해의 발생이나 그 확대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의 과실비율을 70:30으로 평가한다.

나. 구상 의무의 범위

원고가 2022. 2. 15.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의 유족과 F 등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합계 201,383,770원의 보험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보험금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도 다투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60,415,131원(= 201,383,770원 × 30%)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22. 2.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7.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이 법원에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양환승

판사석준협

판사노호성